



지 방 법 원  
판 결

등본입니다.



법원주사 박 찬 직

사 건  
피 고 인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도소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관세법위반

###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40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 가격인 6,800달러보다 낮은 4,000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세관에서, 넥스필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55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 가격인 13,562.4달러보다 낮은 5,831.8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미국회사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자동차 썬팅용 필름 등



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LLumar 루마'(등록번호 제0631800호)에 관하여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나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유일한 국내 공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씨피에프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59롤에 임의로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한 다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진술 부분)

1.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입내역서, 사업장 및 현장 현품 사진, 외화송금 내역, 실제 송금 금액, 신고 금액 비교 내역, 수입신고 번호 수입신고서 및 송금영수증, 실제 인보이스, 수입내역, 당발내역, 저가신고 관련 수입신고서, 실제 인보이스 및 외화송금증, 정산대금 송금 인보이스, 저기신고 내역서, 관세포탈 내역서, 허위신고 내역서

1. 조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 질의 회신문 입수보고), 조사보고(피의자 판매물품 진품 여부 감정결과 입수보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상표법위반 범칙물품 감정결과 회신문

1. 감정서

1. 수사보고(씨피에프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수입한 뒤 임의로 상표를 제작·부착하는 것은 병행수입으로서 보호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을 구매한 자가 임의로 등록상표를 부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우, 특히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과 함께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의 의사는 상품 구매자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일 뿐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상품들이 이른바 진정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sup>1)</sup>, 증거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자신에게서 상품을 매수하여 실제로 시공하는 기술자들로부터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② 자신이 수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병행수입업자의 수입가격과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과 같은 소극적인 사정은 피고인이 수입한 상품과 진정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점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고, ② 정상적인 병행수입업자, 즉 'LLumar 루마' 상표가 정상적으로 부착된 자동차 섀딩용 필름을 외국의 정상적인 판매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수입가격이라



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상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정상품의 정식 판매처가 아닌 중간상인인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상품을 수입하면서도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단지 스스로 포장상자나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진정상품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침해의 범의가 없거나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